



연말정산 및 재무회계 사용자 매뉴얼 및 안내



재무회계팀



1. 연말정산



연말정산 - 진행일정

■ 연말정산의 개요

▶ 대상자 : 재직 중인 교직원(교수, 직원, 조교)

1월 중순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개시, 확정** ▶ 국세청

1월 말 **연말정산 프로그램 입력** ▶ 전체 구성원(각 개인)

1월 말~2월 초 **검토 / 오류검증 / 수정요청** ▶ 재무회계팀

2월 중순 **국세청 신고 및 급여 작업**

2월 24일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반영**

3월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제출서류 : 제출서류 표지 + 각 해당 증빙자료

※ 특이사항 발생 시(해외체류 등) 반드시 재무회계팀 사전협조 요청

■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기자!

- ▶ 대상 :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보청기구입비 등
 -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 각종 기부금 영수증 등
 -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자료제공동의 여부 체크

2. 계속근로자 OR 중도입사자

- 계속근로자 :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1개 생성)
- 중도입사자 : 조회 후 각 항목별 『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
(각 내역별 PDF파일 여러 개 생성)

※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 스캔 후 업로드 금지

■ 연말정산 국세청 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

※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상담(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 126 → ① (고객만족센터) 또는 ☎ 126 → ⑦ → ① (전국 세무서*)

3.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조회

▶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이 아닌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

※ **학사행정 → 행정관리 → 급여관리 → 연말정산관리 → (확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가능함.**

연말정산 – 진행순서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저장 및 영수증 준비

②

연말정산 시스템(YETA) 로그인

※경로 : [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 [가천포털시스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입력기간 중 아이콘 생성 예정

☆☆☆

부양가족 정보 입력

③

PDF파일 업로드 및 각종 설문 시행

④

결과 확인 및 서류 제출(간소화서비스 외 자료 있을 시)

연말정산 – 진행순서

The screenshot shows the Gachon University Portal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various services like '홈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클라우드 메일', etc.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교육이수시간(2021년도)' with a donut chart showing 33 total hours (36 required, 3 remaining), '공지사항' (Notice) with a table of recent announcements, and '학사일정' (Academic Calendar) for December 2021. At the bottom, there is a row of service icons including '전체보기', '정보광장', '연말정산' (highlighted in a red box),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WIND시스템', '한정실습', 'MRO', and 'SMS'. Below the icons, there are tabs for '받은편지함', '정보광장 알리미', and '미결/진행 사항'.

- ※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시 자동으로 연말정산 홈페이지(YETA) 접속 가능
- 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음(전자결재처럼 자동 로그인 연동됨)

연말정산 - 진행순서1-1(사용자 기본정보)

01. 기초 정보 입력 >>>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사용자 기본정보

사용자 기본정보

다음단계 >

연말정산 기본설문

종전 근무지 정보

부양가족 정보

사원번호	2017-0010	성명	강성재	주민번호	81-111-111111-1111		
재직상태	재직	부서	재무회계팀	근무시작	2020-01-01	근무종료	2020-12-31
내/외국인	내국인	국적	한국	국적코드	KR	외국인단일세여부	비적용
거주구분	거주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코드	KR		

주소

E-mail 휴대전화 사내 전화번호

급여	1,965,000	상여	339,000	인정상여	0
직무발명보상금(한도초과분)	0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로 입력

비과세 대상 급여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0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고등교육법	0	소령§16①(국외근로) 100만 원	0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 하)	200,000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 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 내)	200,000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0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보상금	0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에 대한 소득세 감면	0		

공제대상 급여항목

소득세	947,400	지방소득세	94,740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포함)	116,500
국민연금보험료	0	고용보험료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8,500
농어촌특별세	0	공무원연금	0	군인연금	0

연말정산 – 진행순서1-2(기본설문)

01. 기초 정보 입력 >>>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사용자 기본정보

< 이전단계

연말정산 기본설문

다음단계 >

연말정산 기본설문

종·전 근무지 정보

부양가족 정보

연말정산 기본설문

1.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다. 부양가족 확인 예 아니오
2. 2020년에 다른 직장에서 보수(근로소득)를 받은 내역(종·전근무지)이 있다. 예 아니오
3. 내가 신청할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다. 예 아니오
4. 내가 신청할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제외)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예 아니오
5. 나는 연말현재(2020.12.31)세대주이다. 예 아니오
6. 연말현재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
7. 나는 공지된 연말정산자료 등을 숙지하고 사실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본인 책임하에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예 아니오

※ 설문 ③,④,⑦ 번은 반드시 “예”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기본설문 저장

연말정산 – 진행순서1-3(부양가족정보)

01. 기초 정보 입력 >>>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사용자 기본정보

< 이전단계

부양가족

다음단계 >

연말정산 기본설문

1.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2. 기본공제대상 등 정보 수정 후 하단에 저장버튼 누르셔야 적용됩니다.
3.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지 정보

부양가족 정보

가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	산모	70세이상	장애인(1급)	장애인(2급)	자녀세액	월간소득	상징트레자	부양가족추가
본인	강성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정
배우자	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 삭제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강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정 삭제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강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정 삭제

※ 가족사항 수정은 오른쪽에 수정 및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진행

연말정산 - 진행순서2(PDF업로드)

01. 기초 정보 입력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국세청 자료 등록

< 이전단계

국세청 자료 업로드

다음단계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하기" 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근무개월수(종-전 근무지 포함)가 12개월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 상세 항목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천대학교												
종합												

2020년도 근로 공백이 없습니다. 국세청 PDF 다운로드 시 일괄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해주세요

국세청 PDF 파일 목록

파일 등록

데이터 적용

순번	문서종류	파일명	대상자	다운로드	삭제
1	전체	강성재 · -2020년도자료.pdf	강성재 외 3명	다운로드	삭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PDF자료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PDF 금액	적용 금액	상세내역
국민연금/건강보험료(추가납부)	0	0	보기
신용카드	476,376	476,376	보기
직불카드	430,370	430,370	보기
제로페이	0	0	보기
현금영수증	420,822	420,822	보기
보험료	027,600	027,600	보기
의료비	544,668	346,850	보기
교육비	0	0	보기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	1,200,000	1,200,000	보기

연말정산 – 진행순서3(연말정산입력)

01. 기초 정보 입력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인적 공제

< 이전단계

의료비

다음단계 >

사회보장성보험
(4대보험 등)

총 급여의 3% : 15,803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자료 입력 시, 「제출서류리스트」와 「관련증빙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2.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제출 부탁드립니다.(간소화서비스에 구분 안되어있음)
(예 : 안경구입비 영수증, 난임시술비 영수증 등)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관련

성명	코드 관계	의료증빙 구분	지급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산후조리원	간수	PDF 제외금액	지출금액	<input type="button" value="의료비 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실손보험금 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부양가족별 내역"/>
강성재(36세)	00	국세청 제공	수내 불 3모 안	5 '7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0	15,800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NTS"/>
강성재(36세)	00	국세청 제공	믿음 의원	1: '4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0	4,800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NTS"/>
강성재(36세)	00	국세청 제공	온누리 약국	1: '4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0	1,900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NTS"/>
강성재(36세)	00	국세청 제공	바 국	1: '5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0	5,050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NTS"/>
강성재(36세)	00	국세청 제공	선한 정의	6: '6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0	40,000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NTS"/>

연말정산 – 진행순서4-1(연말정산 결과)

01. 기초 정보 입력
02. 국제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

- 연말정산 결과
- 제출서류
- 출력물

🔗 나의 연말정산 리포트

환급액의 증가(또는 추정세액의 감소)를 위해서 **일반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 일반세액공제 적용 :

입력상태 > 사용자 입력중..
일반공제
표준공제

2020년도 연말정산 요약 (일반공제)
상세보기

하기 금액은 추정 값이므로 확정 이후 최종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추가납부 세액 - 1,003,530 (환급)

귀하께서는 상기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 내역
세율을 적용할 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계산 과정입니다.

총급여	,900,115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000,000
특별소득공제	16,530
<small>(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small>	
기납세액 <small>(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small>	1,416,300
납부특례세액	-
최종 납부/환급 세액	- 31

사용자확정

현재 보이는 값은 추정값입니다. 실제 차감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진행순서4-2(제출서류)

01. 기초 정보 입력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03. 연말 정산 입력

04. 결과 조회/출력 >>>

연말정산 결과

제출서류

출력물

[제출서류검토]

※ 귀하가 입력한 내용에 맞추어 연말정산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제출서류 표지 다운로드

관리자 요청 서류

관리자가 요청한 서류 입니다.

서류 추가하기


교육비

교육비 지출액과 구입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직계비속 자녀.입알자]

강**

#기본


교육비납입증명서 [가이드](#) 

 서면제출 **제출여부**

[직계비속 자녀.입알자]

강**

#기본

교육비납입증명서 [가이드](#) 

 서면제출 **제출여부**

연말정산 – 진행순서4-2(제출서류)

가천대학교
2023 연말정산 신청서

사번 201: 0
성명 강성재
부서 재무회계팀
사내전화
휴대전화 010-

제출서류 안내

귀하의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오른쪽 사각형에 표시해 주세요.

제출서류	제출여부	변동없음
[강] 교육비납입증명서	[]	
[강] 교육비납입증명서	[]	

제출서류 동의

- 상기 본인은 관련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안내에 따른 제출서류 구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출서류의 누락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공제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상기 본인은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하여 부당공제 및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 상기 본인은 경우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_____ (인)

연말정산 – 진행순서4-2(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간소화서비스 조회 외 기타자료만 제출**
(제출서류표지 + 해당증빙서류)

※ 제출서류표지는 연말정산시스템 「04.결과 조회/출력」화면에서 출력가능

▶ 제출이 필요한 기타자료의 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인적사항 변동 있을 시)
- 기부금 영수증(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것)
- 안경구입비(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것)
- 난임시술비 증명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및 환율조회표)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가천대학교 외 근무지가 있을 경우)
- 장애인증빙서류(대상자 있을 경우)

▶ 제출처 : 글로벌(재무회계팀), 메디컬(총무관리팀)

연말정산 - 개요

연말정산의 개요

▶ 1~12월에 납부한 세금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정산 작업



연말정산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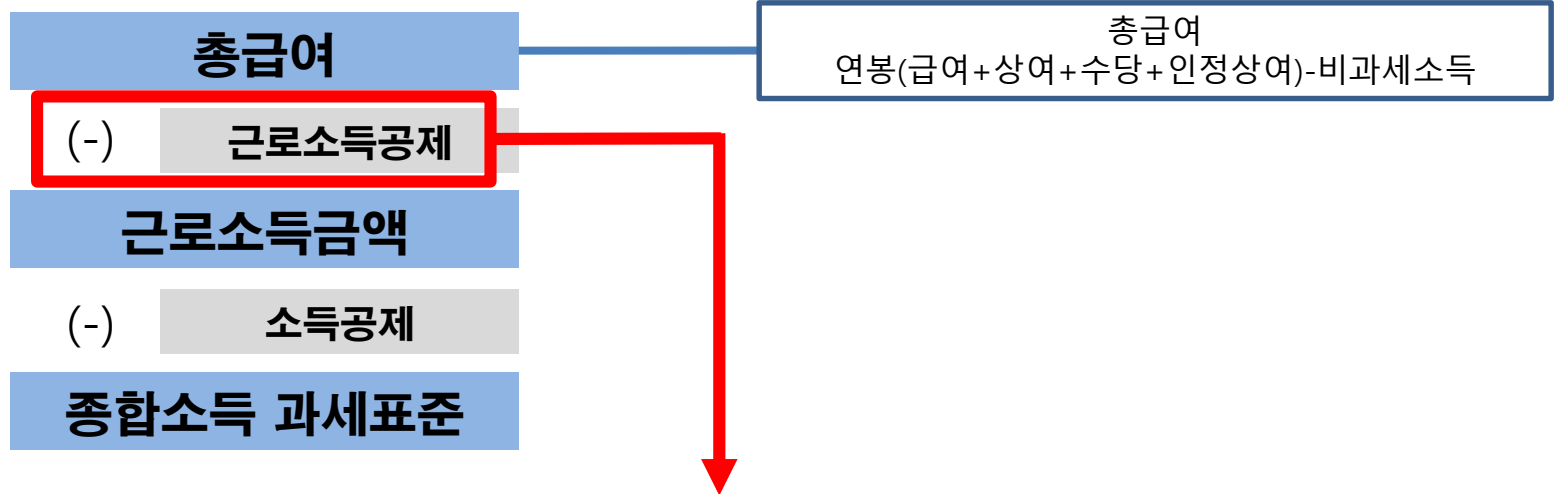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 소득공제 :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
- ▶ 세액공제 : 세율을 적용한 **세금에 직접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줌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 징	소득구간에 따라 혜택이 다름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혜택
감면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이 200만원 - 세율 6% (소득 1,400만 이하) ☞ 세금 120,000원 감면 - 세율 24% (소득 5,000만~8,800만) ☞ 세금 480,000원 감면 - 세율 35% (소득 8,800만~1.5억) ☞ 세금 700,000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이 200만원 - 세율 15% 고정 ☞ 세금 300,000원 감면
세금효과	고소득자 유리	저소득자 유리

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2%

※ 근로소득공제 한도 : 2천만원(총급여액 3억 6,250만원 초과자의 경우)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소득공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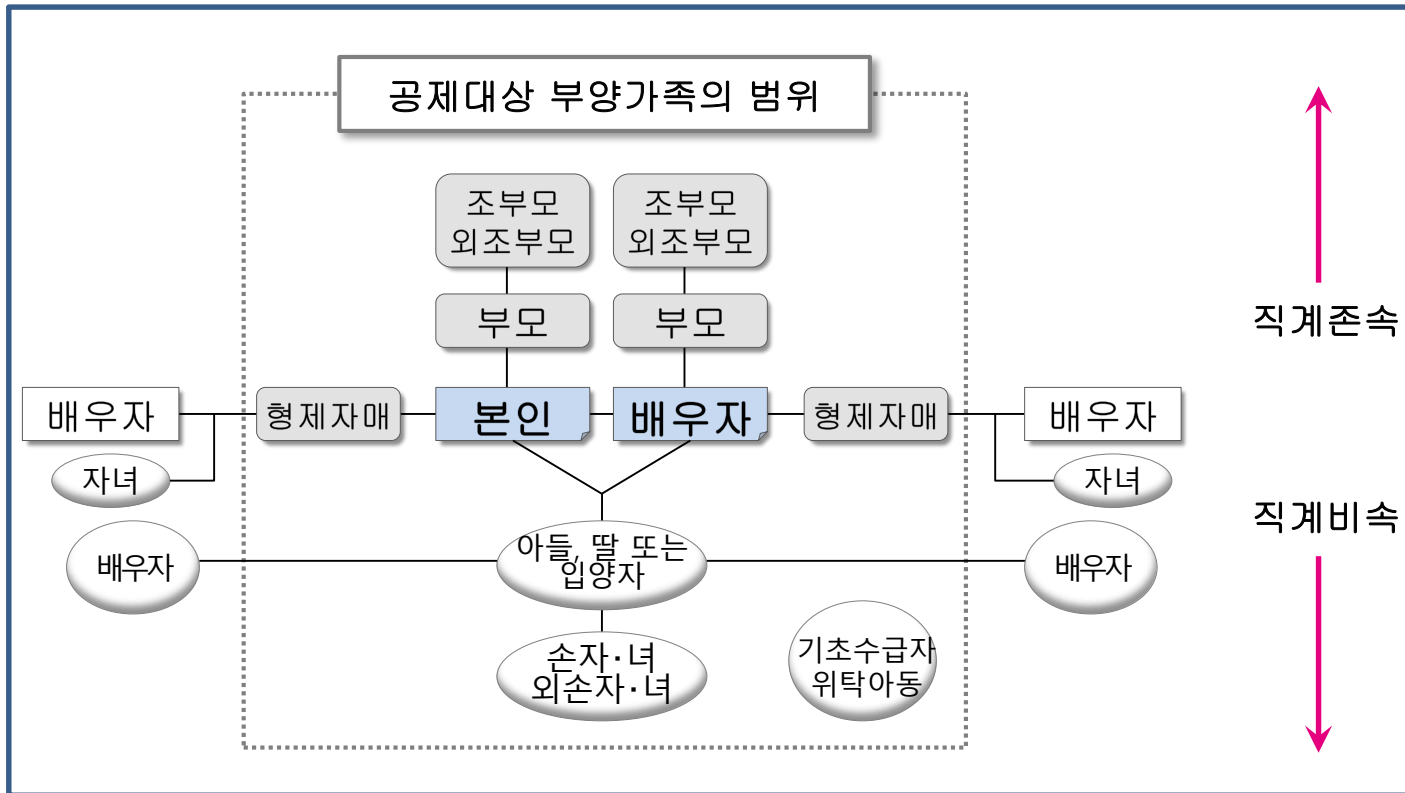
기본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연말정산 - 소득공제 1

■ 인적공제(기본공제)

-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 가족 관계>



연말정산 – 소득공제 1

■ 인적공제(기본공제)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구분	나이	생계	소득금액
배우자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형편상 일시퇴거, 별거 만 허용)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판정시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 연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자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장애인 증명서(혹은 상이증명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 소득공제 1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증명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서울병원	② 사업자등록번호	2 2 2 - 8 2 - 1 2 3 4 5
③ 대표자(성명)	허 풍		
④ 소재지	소주도 특려군 마시면 노우리 44번지 서울병원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김강호	⑥ 주민등록번호	4 0 1 0 0 9 - 1 4 6 7 5 1 3
⑦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3. 장애인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4 0 1 0 0 9 - 1 4 6 7 5 1 3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영구 ■ 비영구 (2014. 1.부터 2015. 12까지)
⑫ 장애 내용	제3호	⑬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p> <p>※ 작성방법: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p> <p>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p> <p>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p> </div>			

<장애인 증빙서류>

반드시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1급~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연말정산 - 소득공제 1

■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득종류		총족사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이자,배당	① 비과세,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②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국외금융소득 제외)
	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사업 (임대)	①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예:작물재배(농사), 1채이하 주택임대) 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수입금액 750만원 이하)
	연금	①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비과세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예: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③ 해당연도의 사적연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확인 요청 해야함
퇴직소득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	
양도소득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② 1세대 1주택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 직접 확인 요청 해야함	

※ 연말정산 담당자는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국세청에서는 전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으로 기본공제 체크해야함

연말정산 – 소득공제 1

■ 인적공제(추가공제)

구분	공제요건	추가공제금액
경로우대자공제	만 70세 이상(~1954.12.31)	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and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and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자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은 불가능함.(한부모공제가 유리)

※ 경로우대자공제는 주민번호 기준으로 프로그램 자동 적용.

▣ 소득 및 세액공제 적용 시 각종 제한사항

구분	소득 및 세액공제대상자의 공제요건 검토					본인 명의만 공제 되는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생계요건	○	○	○	○	○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 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 월세액
연령요건	○	×	×	×	×	
소득요건	○	×	○	○	○	

※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필요 없음

※ 기부금 중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명의만 가능함

연말정산 - 소득공제 2

▣ 주택자금공제

★설문조사를 잘하자!★

▶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소득(세액)공제 대상임

구분	공제조건					소득 (세액) 공제
	세대주 요건	주택수	주택규모	주택가격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연말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외국인	연말현재 무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해당없음	-	원리금상환액 ×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연말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외국인	1주택 이하	해당없음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기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차입	해당연도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연말현재 세대주	연중 무주택	해당없음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납입액 ✓ 개정 (한도 연 300만) × 40%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외국인	연말현재 무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액 × *15%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5.5천만원~7천만원 이하 : 15%

✓ 개정

연말정산 - 소득공제 3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2. 공제대상자 :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제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	한도초과 추가공제	
	X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총급여 25%	

▶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인정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반영)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대중교통비 : 40%
- 전통시장 : 40%
- 소비증가분 : 10% ✓ 개정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한 금액

▶ 기본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연말정산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액*15%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액*24%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액*35%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5억원 초과액*38%	38%

예시) 1.과세표준 : 30,266,128월
 2. 산출세액 : 840,000원+(30,266,128월-14,000,000원)*15%=3,279,919원

연말정산 - 세액공제

■ 세액공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 세액공제 1

■ 기본자녀세액공제 √ 개정

▶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 2016.12.31 이전 출생자

▶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 추가자녀세액공제(출생, 입양)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이상 : 70만원

※ 연말정산 프로그램 자동 적용

연말정산 – 세액공제 2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정

구분		공제한도 (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세액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 min(ISA납입액*10%, 300만원)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구분	공제	공제율	한도	통합한도
개인연금저축	소득	납입액의 40%	72만원 (180만원×40%)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그대로 입력해야 함.

(☆☆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완전 다릅니다. ☆☆)

연말정산 – 세액공제 3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납부한 금액만 해당

구분	대상	금액한도	공제율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혹은 본인이 계약자/피보험자	각 연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15%

※ 단,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증빙서류에 정확하게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 피보험자 성명 기준으로 입력

연말정산 – 세액공제 4

■ 의료비 세액공제 ✓ 개정

1. 공제대상액 : 총 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 지출액
2. 공제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

대상	범위	한도금액	공제율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처방) • 시력보정용 안경 등 구입비(1인당 50만)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 • 대통령령으로 정한 난임시술비 •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li style="padding-left: 20px;">↳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 폐지 <p>※ 미용,성형수술비용,보약 등 은 제외</p>	700만원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 험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15% (20%)*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공제율 : 30%

- 전액대상 추가 :만6세 이하인 자(2018.1.1 이후 출생)
- 실손의료보험금 제외(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수기자료는 입력 후 증빙제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 세액공제 5

■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액 : 교육비 지출액
2. 공제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및 기초수급자 제외)

구분	대상	교육범위	공제율
일반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①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② 인가된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등) -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 중·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연50만원 한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연30만원 한도)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15%
장애인 특수	장애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인가된 교육기관에 지급된 교육비	

※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자금 대출상환은 본인만 가능

근로자본인	취학전~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특수
전액	연 300만	연 900만	전액

■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사례

1.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2.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교육비
3.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4. **초등학생 이상인 자녀의 학원비**
5. 비인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6.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등
7.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지출액

연말정산 – 세액공제 5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대상자별 교육기관의 범위

교육기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	X	○	○
평생교육시설	○	○	X	○	○
어린이집	X	X	X	○	○
학원, 체육시설	X	X	X	○	○
대학원	○	X	X	X	X
학자금대출상환(한국장학재단)	○	X	X	X	X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	○	○	○

연말정산 – 세액공제 5

■ 교육비 세액공제 - 국외교육비

1. 공제대상액 :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및 편,입학을 위한 대학부설 예비교육과정(ESL) 등

2. 국외교육비 적용환율

구분	적용 환율
국내에서 송금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 www.smbis.biz

연말정산 – 세액공제 6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제한 없음

구분-코드		대상	금액한도	이월	공제율
정치-20		본인	근로소득금액	-	10만원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43			근로소득금액 - 정치	-	10만원이하 100/110 10~500만원 15%
특례-10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소득금액 - 정치 - 고향사랑	10년	15% (특례+일반기부금 1천만원 초과할 경우 30% 3천만원 초과경우 40%)
일반 기부금	종교단 체 외 일반- 40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X 3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종교단 체 일반- 41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X 10% + Min(소득금 액 x 20%, 종교외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수기자료는 입력 후 증빙제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 주의사항

■ 종(전)근무지가 있는 연말정산

- ▶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입력해야 함
※ 미 입력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진행

■ 중도입사자의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 ▶ 반드시 상세(월별) 내역 전자문서로 준비 할 것.
- ▶ 상세(월별)내역 다운로드 시 1~12월 모두 체크하여야 함
※연말정산 시스템이 알아서 불공제 내역을 구분함.

■ 부양가족 정보 확인

- ▶ 부양가족 등록, 기본공제 체크 여부 반드시 확인 할 것.

■ 기부금 수기 입력 시 기부코드 확인!!

-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 중복공제, 주택자금 부당·과다공제 유의
▶ 수정 신고 및 가산세 최대 40% 부과